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277 호 2021. 2. 10.(수)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9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1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2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54호[소하천 점용·사용 (변경)허가 공고]·····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85호[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 <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 - 1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연장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2. 3.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창평동 산37-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221㎡
  - 나. 기 간
    - 당초 : 2020. 10. 12. ~ 2020. 12. 31.
    - 변경 : 2021. 1. 1. ~ 2021. 3.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국가\*\*공단
  - 나. 주 소 : 부\*\*역시 \*구 층\*대로\*\*길 46 한진\*\*빌딩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1호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성 명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21.02.08.	제2021-1호	양재길	울산광역시 복구 동해안로 1795-27번지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287-1번지	15	2014.04.29. ~ 2019.04.28.	2019.04.28. ~ 2034.04.27.	전북종자 생산업 운영	기간 연장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54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변경)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신보로드 주식회사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2번길 15-19
소하천명		상연암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연암동 1399번지		
	면적(m <sup>2</sup> )	당초: 일시 38 영구 15 변경: 일시 15 영구 9.5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당초: 일시 2017. 10. 1. ~ 2017. 10. 31. 영구 2017. 11. 1. ~ 2021. 12. 31. 변경: 일시 2021. 2. 3. ~ 2021. 3. 31. 영구 2021. 4. 1. ~ 2021. 12. 31.		
	목적 및 사유	당초: 오수관로 매설 변경: 오수관로 매설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85호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2020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하여 자긍심 고취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현실화

### 2. 주요내용

- 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으로 개정(제명)
- 나. 조문, 별표, 별지 서식의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개정(안 제1조~제17조, 제21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0.1%를 0.08 퍼센트로 변경(안 별표 2)

### 3. 관계법령

- 2020년도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서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 별표 3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 전화 : 052)241-7801, 팩스 : 052)241-7809】

### 5. 기타사항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의견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울산광역시 복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호,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1조제4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제3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21조제1항, 제2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4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같은 별표 표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별표 재직기간

중의 위반사항란 중 “0.1%”을 각각 “0.8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u>환경미화원</u>의 복무 및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환경공무직</u> ----- ----- -----.</p>
<p>제2조(정의) (생 략)</p> <p>① “<u>환경미화원</u>”이란 도로·가로 청소,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 및 운반, 기타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② “반장” 및 “특별감독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관할구역 청소 업무를 총괄하고 <u>환경미화원</u>의 청소구역을 지정하고 인원을 배치하며 청소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p> <p>③ “예비운전원”이란 <u>환경미화원</u> 중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청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① “<u>환경공무직</u>” ----- ----- ----- -----.</p> <p>② ----- ----- ----- ----- <u>환경공무직</u> ----- ----- -----.</p> <p>③ ----- <u>환경공무직</u> ----- ----- -----.</p>
<p>제3조(적용범위) <u>환경미화원</u>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및 울산광역시 북구 <u>환경미화원</u> 노동조합과 구청장(이하 “노사”라 한다)간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적용범위) <u>환경공무직</u> ----- ----- ----- ----- <u>환경공무직</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채용기준 등) ① <u>환경미화원</u>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환경미화원</u>으로 해고되었던 이력이 없는 사람</p> <p>5.·6. (생략)</p> <p>②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u>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제4조(채용기준 등) ① <u>환경공무직</u>은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환경공무직</u>----- -----</p> <p>5.·6. (현행과 같음)</p> <p>② ----- <u>환경공무직</u>----- -----.</p> <p>1.·2. (현행과 같음)</p>
<p>제5조(근무시간) ① <u>환경미화원</u>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여건상 구청장이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 <u>환경미화원</u>은 제1항에 따른 출근 시간 내에 출근하여 근무상황부에 날인한 후 구청장 또는 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p>	<p>제5조 (근무시간) ① <u>환경공무직</u> ----- ----- -----.</p> <p>② <u>환경공무직</u> ----- ----- -----.</p>
<p>제6조(결근신고) ① <u>환경미화원</u>이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반장에게 전날 근무시간 내에 결근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결근 당일 작업 시작 시간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결근신고) ① <u>환경공무직</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휴가) ① <u>환경미화원</u>은 연 7일의 기간 내에서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휴가) ① <u>환경공무직</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관리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환경업무 담당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u>환경미화원</u>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환경업무 담당과장은 <u>환경미화원</u>의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8조(관리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 ----- <u>환경공무직</u> ----- -----.</p> <p>② ----- <u>환경공무직</u>----- -----.</p>
<p>제9조(복무) <u>환경미화원</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9. <u>환경미화원</u> 징계처분 기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p>	<p>제9조(복무) <u>환경공무직</u>-----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환경공무직</u> ----- ----- -----</p>
<p>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환경미화원</u>의 복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무규칙을 위반한 <u>환경미화원</u>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경고(훈계) 조치하거나 징계처분 의뢰를 할 수 있다.</p>	<p>제10조(지도감독) ----- ----- <u>환경공무직</u>----- ----- ----- <u>환경공무직</u>----- ----- -----.</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반장 및 특별감독관) ①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u>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장 및 특별감독관을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1. <u>환경미화원</u>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2. <u>환경미화원</u>으로서 덕망이 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p> <p>3. <u>환경미화원</u>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p> <p>③·④ (생략)</p> <p>1. <u>환경미화원</u>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p> <p>2.·3. (생략)</p> <p>⑤ (생략)</p>	<p>제11조(반장 및 특별감독관) ① ----- <u>환경공무직</u>----- -----.</p> <p>② (현행과 같음)</p> <p>1. <u>환경공무직</u>----- -----</p> <p>2. <u>환경공무직</u>----- -----</p> <p>3. <u>환경공무직</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1. <u>환경공무직</u> ----- -----</p> <p>2.·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반장 및 특별감독관의 임무)</p> <p>① (생략)</p> <p>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청소를 실시하고 관할 구역 <u>환경미화원</u>을 지휘·감독할 것</p> <p>2. <u>환경미화원</u>에게 관할구역 담당 업무와 청소구간을 지정·배치하고 청소업무를 총괄·지휘할 것</p> <p>3. <u>환경미화원</u>의 출퇴근 및 복무 사항 등을 지도·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할 것</p> <p>4. ~ 6. (생략)</p>	<p>제12조(반장 및 특별감독관의 임무)</p> <p>① (현행과 같음)</p> <p>1. ----- ----- <u>환경공무직</u>----- -----</p> <p>2. <u>환경공무직</u>----- -----</p> <p>3. <u>환경공무직</u>----- -----</p> <p>4. ~ 6.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예비운전원) ① (생 략)                      1. <u>환경미화원</u> 중 1종 운전면허증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u>환경미화원</u>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u>환경미화원</u>으로서 덕망이 있고 능동적인 사람                      ② (생 략)                      1. <u>환경미화원</u>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                      2.·3.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에 탑승한 <u>환경미화원</u>에게 정당한 지시를 하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할 것</p>	<p>제13조(예비운전원) ① (현행과 같음)                      1. <u>환경공무직</u> -----                      -----                      2. <u>환경공무직</u> -----                      -----                      3. <u>환경공무직</u> -----                      -----                      ② (현행과 같음)                      1. <u>환경공무직</u> -----                      -----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환경공무직</u> -----                      -----</p>
<p>제14조(교육) ① <u>환경미화원</u>은 연 2회 이상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u>환경미화원</u>으로서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p>	<p>제14조(교육) ① <u>환경공무직</u> -----                      -----                      -----                      -----                      ② ----- <u>환경공무직</u> -----                      -----                      -----</p>
<p>제15조(정년) <u>환경미화원</u>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퇴직시기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로 한다.</p>	<p>제15조(정년) <u>환경공무직</u> -----                      -----                      -----</p>
<p>제16조(해고) ①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생 략)                      2. <u>환경미화원</u> 징계처분 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생 략)</p>	<p>제16조(해고) ① ----- <u>환경공무직</u> -----                      -----                      -----                      -----                      1. (현행과 같음)                      2. <u>환경공무직</u> -----                      -----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징계위원회 설치) ① <u>환경미화원</u>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u>환경미화원</u>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1. <u>환경미화원</u> 징계처분 “정직” 이상에 관한 사항</p> <p>2. 그 밖에 <u>환경미화원</u>의 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17조(징계위원회 설치) ① <u>환경공무직</u>----- ----- <u>환경공무직</u> ----- ----- ----- ② (현행과 같음) 1. <u>환경공무직</u> ----- ----- 2. ----- <u>환경공무직</u>----- -----</p>
<p>제21조(징계 등) ① <u>환경미화원</u>의 징계처분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p> <p>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u>환경미화원</u>이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처분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u>환경미화원</u>이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p> <p>④ 별표 2의 징계처분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u>환경미화원</u>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준 등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p>	<p>제21조(징계 등) ① <u>환경공무직</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환경공무직</u>----- ----- ----- <u>환경공무직</u>----- ----- ----- ④ ----- ----- <u>환경공무직</u>----- ----- -----</p>

## 신·구 별표 및 별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환경공무직 근무시간(제5조제1항 관련)				
<u>환경미화원</u> 근무시간					<u>환경공무직</u> 근무시간				
기 간	시작 시각	휴게(조식) 시간	휴게(중식) 시간	종료시각	기 간	시작 시각	휴게(조식) 시간	휴게(중식) 시간	종료시각
1~12월	07:00	09:00~10:00	12:00~13:00	17:00	1~12월	07:00	09:00~10:00	12:00~13:00	17:00
※ 1일(8시간)근무시간 내에서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1일(8시간)근무시간 내에서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제21조 관련)

징계의 가중 기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경고	1일	2일	3일	4일	5일	해고	
재직기간 중	1. 범죄처분								
	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1회	
	나. 벌금 200만원 이상 (업무수행 중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500만원 이상)						1회	2회	
	다. 벌금 200만원 미만 (업무수행 중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회	2회	3회	
	라. 선고 유예					1회	2회	3회	
	마. 기소 유예				1회		2회	3회	
	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미조치						1회	2회	
	2. 음주운전								
	가. 음주운전 (혈중알콜 0.1% 이상)						1회	2회	
	나. 음주운전 (혈중알콜 0.1% 미만)					1회	2회	3회	
	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자					1회	2회	3회	
	3. 성범죄								
	가. 성폭력·성매매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예: 미성년자 등)							1회	
	나. 성폭력·성매매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회	2회		
	다. 성희롱·성추행						1회	2회	
	4. 무고한 투서 등으로 직장 내 화합을 해하는 자								
	가. 중대한 사항 (인사감사부서, 경찰, 언론 등 무고한 투서)						1회	2회	
	나. 경미한 사항 (동료 또는 담당부서 등 무고한 투서)					1회		2회	
	5. 주민, 동료 및 공무원에게 폭언(욕설)·폭행 행위						1회	2회	
	6. 도급행위 (동료 및 타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포함)								
	가. 7일 이상							1회	
	나. 7일 미만						1회	2회	
	7. 부정한 목적의 금품수수 또는 요구행위								
	가. 100만원 이상							1회	
	나. 100만원 미만						1회	2회	
	8.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준 행위						1회	2회	3회

【별표 2】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제21조 관련)

징계의 가중 기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경고	1일	2일	3일	4일	5일	해고		
재직기간 중	1. 범죄처분									
	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1회		
	나. 벌금 200만원 이상 (업무수행 중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500만원 이상)							1회	2회	
	다. 벌금 200만원 미만 (업무수행 중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회	2회	3회	
	라. 선고 유예						1회	2회	3회	
	마. 기소 유예					1회		2회	3회	
	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미조치							1회	2회	
	2. 음주운전									
	가. 음주운전 (혈중알콜 0.08퍼센트 이상)							1회	2회	
	나. 음주운전 (혈중알콜 0.08퍼센트 미만)						1회	2회	3회	
	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자						1회	2회	3회	
	3. 성범죄									
	가. 성폭력·성매매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예: 미성년자 등)								1회	
	나. 성폭력·성매매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회	2회	
	다. 성희롱·성추행							1회	2회	
	4. 무고한 투서 등으로 직장 내 화합을 해하는 자									
	가. 중대한 사항 (인사감사부서, 경찰, 언론 등 무고한 투서)							1회	2회	
	나. 경미한 사항 (동료 또는 담당부서 등 무고한 투서)						1회		2회	
	5. 주민, 동료 및 공무원에게 폭언(욕설)·폭행 행위							1회	2회	
	6. 도급행위 (동료 및 타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포함)									
	가. 7일 이상								1회	
	나. 7일 미만							1회	2회	
	7. 부정한 목적의 금품수수 또는 요구행위									
	가. 100만원 이상								1회	
	나. 100만원 미만							1회	2회	
	8.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준 행위							1회	2회	3회



현 행

개 정 안

징계의 가중 기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경고	정 직					해고
			1일	2일	3일	4일	5일	
1년 단위	1. 근무시간 미준수	1회	2회	3회	4회		5회	
	2. 지시사항 미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3. 담당구역 청소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4. 복장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5. 무단결근,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2년 단위	1. 근무태만	1회	2회	3회	4회		5회	
	2.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3. 근무 중 음주·도박 행위			1회		2회	3회	
	4. 지역주민 또는 동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민원신고 및 제보 등 포함)			1회		2회	3회 4회	
	5. 폐기물 무단투기·소각 행위			1회	2회	3회	4회	
	6. 사행행위 조장			1회		2회	3회	

< 처분 등의 기준 >

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가. 경고처분 2년 10회 이상: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2년 5회 이상: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2년 10일 이상: 해고
2. 동시에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르되, 경고처분 경합 시에는 정직 1일로 처분한다.
3. “1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4. “2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 이전 최근 2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5. 제21조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한 단계 감경 예시  
예) 무단결근 1회에 따른 정직 2일 → (감경) 정직 1일
6. 업무수행 중 단순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범죄처분, 음주운전, 성범죄 및 도급행위와 고위적인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7. 범죄처분이나 음주운전 또는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범죄처분, 음주운전, 성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일으킨 경우 징계처분 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처분할 수 있다.

징계의 가중 기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경고	정 직					해고
			1일	2일	3일	4일	5일	
1년 단위	1. 근무시간 미준수	1회	2회	3회	4회		5회	
	2. 지시사항 미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3. 담당구역 청소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4. 복장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5. 무단결근,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2년 단위	1. 근무태만	1회	2회	3회	4회		5회	
	2.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3. 근무 중 음주·도박 행위			1회		2회	3회	
	4. 지역주민 또는 동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민원신고 및 제보 등 포함)			1회		2회	3회 4회	
	5. 폐기물 무단투기·소각 행위			1회	2회	3회	4회	
	6. 사행행위 조장			1회		2회	3회	

< 처분 등의 기준 >

1. 종합처분: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가. 경고처분 2년 10회 이상: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2년 5회 이상: 해고  
다.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2년 10일 이상: 해고
2. 동시에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르되, 경고처분 경합 시에는 정직 1일로 처분한다.
3. “1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4. “2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 이전 최근 2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5. 제21조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한 단계 감경 예시  
예) 무단결근 1회에 따른 정직 2일 → (감경) 정직 1일
6. 업무수행 중 단순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범죄처분, 음주운전, 성범죄 및 도급행위와 고위적인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7. 범죄처분이나 음주운전 또는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범죄처분, 음주운전, 성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일으킨 경우 징계처분 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처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환경미화원 관리카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세대주 및 관계	
(한글) ○○○ (한자) ○○○			□남 □여					
주 소		전 화		자 택 :				
				핸드폰 :				
		특기		취 미				
병역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외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및 전 공 학 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 별		년월일		종 별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고		
기타사항								

【별지 제1호서식】

환경공무직 관리카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세대주 및 관계	
(한글) ○○○ (한자) ○○○			□남 □여					
주 소		전 화		자 택 :				
				핸드폰 :				
		특기		취 미				
병역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외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및 전 공 학 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 별		년월일		종 별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고		
기타사항								

현 행

개 정 안

【뒷 면】

【뒷 면】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위
징계사항	위 반 일		위반사항	처 분 일	처 분 사 항	비 고
기타사항	날 짜		내 용			비 고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위
징계사항	위 반 일		위반사항	처 분 일	처 분 사 항	비 고
기타사항	날 짜		내 용			비 고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확 인 서</p> <p><input type="checkbox"/> 인적사항</p> <p>○ 근무지 : ○ 성명 :</p> <p><input type="checkbox"/> 위반사항</p> <p>○ 일시 : 년 월 일 ( : ~ : ) ○ 위반내용 :</p> <p>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u>환경미화원</u> 복무 규칙」 제21조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사항이 위와 같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 : (인)</p> <p>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확 인 서</p> <p><input type="checkbox"/> 인적사항</p> <p>○ 근무지 : ○ 성명 :</p> <p><input type="checkbox"/> 위반사항</p> <p>○ 일시 : 년 월 일 ( : ~ : ) ○ 위반내용 :</p> <p>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u>환경공무직</u> 복무 규칙」 제21조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사항이 위와 같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 : (인)</p> <p>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 종	
	④주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24시간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b>환경미화원</b> 복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인적사항	①성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 종	
	④주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24시간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b>환경공무직</b> 복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 (절취선) -----

----- (절취선) -----

진술권 포기서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 종	
	④주소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인적사항	①성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 종	
	④주소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4호서식】</p> <p style="font-size: 1.2em;">서 면 진 술 서</p>	<p>【별지 제4호서식】</p> <p style="font-size: 1.2em;">서 면 진 술 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소 속</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직 종</td> <td style="width: 55%;"></td> </tr> <tr> <td>성 명</td> <td></td> <td>제출기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사 건 명</td> <td colspan="3"></td> </tr> <tr> <td>불참사유</td> <td colspan="3"></td> </tr> </table>	소 속		직 종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참사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소 속</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직 종</td> <td style="width: 55%;"></td> </tr> <tr> <td>성 명</td> <td></td> <td>제출기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사 건 명</td> <td colspan="3"></td> </tr> <tr> <td>불참사유</td> <td colspan="3"></td> </tr> </table>	소 속		직 종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참사유			
소 속		직 종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참사유																																	
소 속		직 종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참사유																																	
<p>진 술 내 용</p>   <p>『울산광역시 북구 <b>환경미화원</b> 복무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성 명 (인)</p> <p>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p>	<p>진 술 내 용</p>   <p>『울산광역시 북구 <b>환경공무직</b> 복무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성 명 (인)</p> <p>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① 소속부서	② 해당 직무	③ 성 명
④ 의결주문			
⑤ 이 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5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① 소속부서	② 해당 직무	③ 성 명
④ 의결주문			
⑤ 이 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관계법령

### □ 2020년도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서

제2조(교섭권한 및 적용범위) ① “갑”은 “을”을 울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및 구청·군청에 종사하는 환경공무직(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기타 제반 사항을 협약 체결한다.

② “갑”은 전 조합원의 단체교섭을 “을”을 통해서만 행하고 “갑”과 “을” 간에 합의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누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